

보도시점 2023. 6. 27.(화) 06:00 배포 2023. 6. 26.(월) 15:00

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·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?

-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은 그대로 유지
-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기준으로 술·담배 구매 가능

- 오는 28일(수)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·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.
- 여성가족부(장관 김현숙)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·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다고 27일(화) 밝혔다.
 -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‘만 19세 미만인 자로서,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’고 규정하고 있으며,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·담배 구매가 가능하다.
 -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,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,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,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.
-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“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과 함께, 청소년 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청소년가족정책실	책임자	과 장	김성벽 (02-2100-6291)
	청소년보호환경과	담당자	사무관	진은미 (02-2100-6292)